

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전문위원 한철우

#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## 1. 회부경위

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1월 1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월 2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## 2. 제안이유

- 「지방세법시행령」 개정(2014. 8. 12)에 따라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신고납부방법 등을 현행 조례에 신설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신고납부 방법 신설 (안 제19조)
  -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(석탄·석유·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)가 매월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발전소 소재지 시장·군수에게 신고납부 하도록 명시
- ※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생산한 전력 중 전기판매사업자(한국전력거래소)에게 판매되는 전력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

○ 부과대상 지역 규정 (안 제20조)

-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지역은 충청북도 전 지역으로 함.

#### 4. 검토의견

금번 개정조례안은 2014년 8월 12일 개정·시행된 「지방세법 시행령」에 따라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납부대상 중 제외되던 전기판매업자에게 판매되는 전력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도록 함에 따라, 화력발전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 신고납부 방법을 신설하고, 부과대상지역을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 :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

## 【참고】

### 1. 지역자원시설세(특정자원분)\* 과세대상 및 세율

과세대상	납세의무자	과세표준 및 세율	납세지
발전용수	수력발전을 하는 자	10세제곱미터당 2원	발전소소재지
지하수	지하수를 채수하는 자	먹는 물 세제곱미터당 200원	채수공소재지
		온천수 세제곱미터당 100원	
		기타 세제곱미터당 20원	
지하자원	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	채광된 광물가액의 0.5%	광업권소재지
컨테이너	컨테이너를 입항·출항 시키는 자	컨테이너 1TEU당 15,000원	부두 소재지
원자력발전	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	발전량 킬로와트시(kWh) 당 1원	발전소소재지
화력발전	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	발전량 킬로와트시(kWh) 당 0.3원	발전소소재지

\*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부동산분(건축물에 부과), 특정자원분으로 구분

### 2. 충북 지역자원시설세(특정자원분) 과세대상

- 우리도에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 
서원구 소재의 청주열병합발전소가 해당됨(발전용량 : 61만kWh)

### 3. 조례개정 이전까지 화력발전에 대한 과세

- 지방세법에서는 화력발전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세율까지 법으로 정하고, 조례에서는 신고납부방법 등만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시행령 개정이후부터 납세의무자로 포함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매월 다음달 말까지 자진신고납부하고 있음(지하수, 발전용수 등의 신고납부방법 준용)
- '14. 8월 이후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세액 : 4백만원  
(2015년 예상 세수는 24백만원)